

# 익산 송학동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일 : 2008. 10. 31.)

1. 위치 및 공급호수 : 익산시 송학동 520번지 일원 국민임대주택 700호

## 2. 임대대상 및 조건

신청 형별	세대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임대조건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공급면적(㎡)			기타 공용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임대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원)				
	전용	주거 공용	계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43	43.000	14.886	57.886	23.365	81.251	120	78	42	103	12,257	2,450	9,807	91,000	벽식 개별 난방	'09.4	
42	42.470	15.321	57.791	23.076	80.867	80	52	28	107	12,686	2,530	10,156	93,000			
52A	52.160	20.320	72.480	28.342	100.822	300	195	105	101 106	22,548	4,500	18,048	119,000			
52B	52.260	20.217	72.477	28.396	100.873											
59A	59.920	22.875	82.795	32.559	115.354	200	130	70	102 104 105	24,580	4,910	19,670	149,000			
59B	59.940	22.550	82.490	32.570	115.060											

-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입니다.
- ※ 위 공급호수 중 우선공급호수는 신청 후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일반공급호수로 전환됩니다.
- ※ 주택의 규모 표시는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형별란에 표시된 43~59B는 전용면적 형별 구분을 위해 표시한 것이니 신청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공급면적(㎡)은 전용면적에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입니다.
- ※ **상기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자격 충족자에게 적용되는 조건으로 동별, 향별, 층별, 층세대별 차등이 없으며, 입주기간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 43, 42, 52A, 52B형은 복도식(복도부분 새시 설치)으로, 59A, 59B형은 계단식으로 건설됩니다.  
단, 43형(120세대)만 발코니 미확장형이고, 나머지(580세대)는 발코니 부분확장형입니다.
- ※ 52A,B형 및 59A,B형은 **형별 구분없이 52형 및 59형으로 각각 접수합니다.(A형, B형으로 구분 접수 아니함)**
-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통보 합니다.

## 3. 신청자격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입주자모집공고일(2008.10.31)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되는 자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월평균소득 2,572,800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2,818,440원이하) * 월평균소득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며, 4인 이상 세대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주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4인이상인 세대를 의미함
토지	개별공시지가 기준 5,000만원이하 * 지적법에서 정한 14개 지목(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양어장, 잡종지)을 대상으로 하여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농지원부상 농업인과 소유자가 동일한 토지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자동차	현재가치 기준 2,200만원이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 * 비영업용자동차를 대상으로 세대주 및 세대원 각각의 자동차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자동차등록원부상 장애인 사용자자동차는 제외함 (소명의무는 자산소유자에게 있음)

- ※ **단독세대주(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단독세대주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사위와 장인 또는 장모 ② 며느리와 시아버지 또는 시어머니 ③ 미혼인 형제·자매(단, 부모의 사망 사실이 확인된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4. 공급일정 및 장소

신청 형태	신청자격		신청접수	당첨자발표	계약체결	장소(신청접수,당첨자발표,계약)
	월평균소득	순위				
43 42	2,572,80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는 2,818,440원이하)	우선공급	'08.11.11~12 (09:30~17:00)	'08.11.28 (15:00)	'09. 1. 7~9 (10:00~16:00)	신청접수 : 분양사무실 (단지내 복지관)  당첨자발표 : 분양사무실 공사홈페이지  계약장소 : 분양사무실
	1,837,71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	1,2,3순위				
	1,837,710원초과~ 2,572,80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는 2,818,440원 이하)	1,2,3순위				
52A 52B 59A 59B	2,572,800원이하 (단 4인이상 세대는 2,818,440원 이하)	우선공급	'08.11.11~12 (09:30~17:00)	'08.11.13~14 (09:30~17:00)		
		1,2순위				
		3순위				

※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하지 않음.

#### 5. 입주자선정

##### ■ 우선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국가유공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5항)	<p><b>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에게</b> 일정호수를 우선공급</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부양여부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li> <li>②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제3급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인경우 포함)</li> <li>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및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li> <li>④ 북한이탈주민</li> <li>⑤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중소기업청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li> <li>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 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자</li> <li>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li> <li>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li> <li>⑨ 65세 이상 고령자</li> </ol>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6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⑩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10 .31) 현재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세대주에게 일정호수를 우선공급</li> </ol>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주택공급규칙 제32조7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⑪ 행정안전부 장관이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임을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통보한 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li> </ol>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8항)**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신청자격	1. <b>전용 50㎡ 미만</b> 청약저축 가입유무와 관계없이 월평균소득 2,572,800원 이하인 세대에게 아래 입주자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  2. <b>전용 50㎡ 이상</b>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되고, 6회 이상 납입한 자로서 월평균소득 2,572,800원 이하인 세대에게 아래 입주자선정 순위에 따라 공급 ('09.1.1 이후부터는 12개월이 경과되고, 12회 이상 납입하여야 함)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혼인기간에 따라 순위를 정함 ① 1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② 2순위 :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자
동일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동일순위내 경쟁시 아래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 ① <b>자녀 수가 많은 자</b> * 재혼시 전배우자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 포함 (동일순위 내 경쟁시에만 적용됨) ② <b>자녀수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 선정</b>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 유의사항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상기 3.신청자격 외에도(상기 3.신청자격 포함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①②③④항 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만 신청 가능함.**

-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익산시) 거주자로서**
- ②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
- ③ **그 기간에 출산(입양포함)하여 자녀가 있으며**
- ④ **50㎡이상 주택인 경우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부한 자만 신청이 가능 ('09.1.1 이후부터는 12개월이 경과되고, 12회이상 납입하여야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의 소득 및 자산(토지, 자동차)도 합산하여 입주자격을 판단함.

※ 혼인 기간은 혼인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재혼 역시 포함됨(단 재혼 후 출산한 경우에만 신청가능)

※ 출산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신고일로 판단하며, 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 **당해 국민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우선공급으로 당첨이 된다하더라도 당첨자로 전산관리되지 않으며, 추후 다른 소형분양,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재신청 가능함**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6항 (영구임대주택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7항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8항 (신혼부부)
	계	노부모부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 유공자	중소기업 근로자	3자녀 이상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43	24	6	4	4	2	2	6	6	12	36
42	16	4	3	3	1	1	4	4	8	24
52	60	15	10	10	5	5	15	15	30	90
59	40	10	7	7	3	3	10	10	20	60

- 우선공급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의한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우선 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처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우선공급은 항목별로 신청시의 잔여호수가 있을 경우 잔여호수는 순위 및 배점기준으로 타 항목 우선공급대상자에게 배정됨.

## ■ 일반공급

구 분	입주자선정 방법
전용면적 50㎡미만 (43형) (42형)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013,170원)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월평균소득이 1,837,710원 초과 2,572,800원(단, 4인 이상 세대는 2,818,440원) 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단,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군산시, 김제시, 전주시, 완주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전용면적 50㎡이상 (52A,B) (59A,B)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 순위내 경쟁시에는 익산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 ① 1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② 2순위 : 청약저축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③ 3순위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 ※ 거주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공고일 이후 전입은 인정하지 않음)  
 ※ 청약저축을 사용하여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음.

## ■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아래 각 호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대로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세대주 나이	50세 이상	40세 이상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1년 이상
④ 미성년자녀수(만20세미만)	3자녀 이상	2자녀	-
⑤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b>3점</b>			
⑥ 중소기업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b>3점</b>			
⑦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로부터 1년 이상 건설근로자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건설근로자 : <b>3점</b>			
⑧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 <b>3점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b>			
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중 청약저축가입자 : <b>3점 (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b>			
⑩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 <b>전용면적 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b> )			
가.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b>2점</b>			
나. 각 순위별 최저 납입횟수보다 6회 이상 추가 납부한 자 : <b>1점</b>			

- ※ ⑤,⑥,⑧,⑨의 가점은 주택공급규칙 제32조제5항에 의한 국가유공자 등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 제외  
 ※ 부양가족은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포함) 및 형제·자매(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를 말함.(세대분리된 배우자와 그 부양가족 포함)

## 6. 신청서류

### ■ 주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주민등록표등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 배우자와 세대분리 되어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제출
- 주민등록표초본 1통(공고일 이후 발행분)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변동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익산시 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익산시에서의 거주기간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주민등록표등본상 해당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자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표초본 추가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하며,
  - 신청자와 동일등본상의 세대원이 두 개 이상의 건강보험증에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사본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공고일 이후 발행분) 1통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제출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신분증,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 국민주택공급신청서 1통 (전용 50㎡이상 주택을 신청하려는 청약저축 1,2순위자 및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 신청자의 경우만 가입은행에서 발급)
- 국민임대주택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공사 소정양식으로 접수장소에서 작성하여 제출)
- 소득입증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

해 당 자 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 급 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07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또는 '07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 세무서
	'08년 신규취업자	· '08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08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 재직증명서 첨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07년 종합소득세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 부증명서(기준소득월액이 표시되도록 발급) ·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인 경우)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무직자, 일용직 근로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공사 소정양식)	· 접수장소

### ▶ 대리신청시 추가로 구비할 서류

- 본인, 배우자 외에는 대리신청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함
  - 신청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계약자의 인감이 날인된 신청위임장 1통
  -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및 도장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

항 목	공 급 대 상	제 출 서 류	발 급 처
우선공급 대상자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세대주와의 관계가 표시되도록 발급)	동사무소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동사무소
	③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에 신청	국가보훈처 (지방보훈청)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중소기업청
	⑥ 민법상 미성년(만20세미만)자인 3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⑦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증명서	동사무소
	⑧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⑨ 만 65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동사무소
	⑩ 영구임대주택 거주자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⑪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⑫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우선공급신청자 (혼인기간 5년이내, 혼인기간내 자녀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해당자만)	동사무소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서류 (입주자 선정참조)	①~③ 세대주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만20세미만)가 2인 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가족관계증명서	동사무소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안되는 자	직계존속의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사항 포함)	동사무소
	⑥ 중소기업체 근로자(상시근로자수 300인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이하의 중소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재직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소득세원천징수 이행 상황신고서	해당직장
	⑦ 1년이상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증지를 교부받은 자	퇴직공제금적립내역서 또는 건설근로자복지수첩(원본 지참)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전용면적 40~50㎡ 미만 주택 신청자만 해당)	차상위 계층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	지자체 (동사무소)
	⑨ 청약저축 추가납입회수 (전용면적 50㎡ 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청약저축순위서류로 확인	(별도제출 없음)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약저축 가입자 (전용면적50㎡이상 주택 신청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청약저축통장 1면 사본	-

## 7.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 당첨자 결정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분양사무실)에 게시하며, 공사홈페이지([www.cdc21.co.kr](http://www.cdc21.c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개별통보하지 않으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로 답변드리지 않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함

### ■ 계약장소 : 분양사무실(단지내 복지관)

### ■ 계약안내

- 당첨자는 ① **계약금** ② **인감증명서 1통**(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 공급신청자 본인이 직접 계약체결시 주민등록증사본 및 여권사본으로 같음) ③ **인감도장** ④ **신분증**을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별도 계약안내를 하지 않음**)
- 계약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만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를 허용함 (단, 배우자이외의 자가 대리할 경우에는 본인이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함)

## 8. 유의사항 (신청전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은 <b>분양전환되지 않는 30년 국민임대주택</b>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li> <li>•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li> <li>• 당첨 및 계약후 거주하다가 입주기준소득을 초과한 입주자는 소득초과정도에 따라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하여야 합니다.</li> <li>•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의 면적을 말하며, 기타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지하주차장 등의 면적입니다.</li> <li>•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li> <li>•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확장형이나,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b>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b></li> </ul>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신청자(세대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및 자산소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li> <li>•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b>입주신청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b></li> <li>•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주, 토지 및 자동차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li> </ul>
공급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접수는 신청대상자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자는 접수받지 않습니다.</li> </ul>

<p><b>입주자 선 정</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li> <li>•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li> </ul>
<p><b>신청서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li> <li>•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li> <li>•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li> <li>•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li> <li>• 이 주택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므로 신청접수장소에 직접 방문하여 청약하여야 합니다.</li> <li>•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li> </ul>
<p><b>당첨자결정 및 계약안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li> <li>•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li> </ul>
<p><b>기타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li> <li>•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선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li> <li>•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선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li> <li>•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li> <li>•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b>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은행, 농협중앙회, 하나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에 대해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b></li> <li>•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li> <li>•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li> <li>• <b>이 주택의 사업주체는 전북개발공사이고,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통보 합니다.</b></li> <li>• 이 주택의 시공업체는 금광기업(주) 및 광진건설(주)이고, 연대보증업체는 중흥건설(주)이며, 감리회사는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및 종합건축사사무소 세림(주)입니다.</li> <li>• 도시계획도로인 학곡선의 경우 단지와 인접한 남측일부도로는 개설되었으나, 나머지 부분은 미개설되어 있음을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인근 송학초등학교는 약 1.5k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음을 유념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li> <li>•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합니다.</li> </ul>



항 목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검색대상	• 신청자 본인과 그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 건물도 주택으로 봄)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주택공급규칙 제6조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소재 주택중 현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피상속인이 거주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아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2) 85㎡이하의 단독주택</li> <li>(3)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ul> </li> <li>•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li> <li>•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li> <li>•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공공기관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li> <li>•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ul>

※ 이 주택은 정부가 무주택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여 건설하는 (30년)국민임대주택입니다. 건본주택(모델하우스)은 익산 송학동 국민임대아파트 공사현장 1층에 10월 31일부터 전시됩니다. 이 주택은 43형(120세대)만 발코니 미확장형이고, 42,52,59형(580세대)는 발코니 부분확장형입니다.

임대문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개발공사 고객센터 : (063) 280-7535~9, 080-280-5678</li> <li>◆ 건본주택전시관(분양사무실) : (063) 854-6611, 6622, fax 854-6688</li> <li>◆ 전북개발공사 홈페이지 : <a href="http://www.cdc21.co.kr">http://www.cdc21.co.kr</a></li> </ul>
------	--



“전북을 부강하게, 도민을 행복하게”

**전 북 개 발 공 사**

# 견본주택 찾아오시는 길

“전북도민의 **행복한 삶** 전북개발공사가 책임지겠습니다.”

● **현 장 안 내** ●



익산승학지구  
국민임대아파트  
건설현장

문의전화

견본주택전시관  
063-854-6611, 6622  
080-280-5678

# 익산 송학동 지안리즈 국민임대아파트 조감도

